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22만여 명 신고·신청

= 추정 재외선거권자 223만여 명 중 10%대 수준 예상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91일간 재외공관과 구·시·군청에서 재외선거 참여 신고·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마감일인 한국시각 10월 21일 13시 현재 추정 재외선거권자 223만여 명의 9.7% 수준인 21만 7천여 명이 신고·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 도입된 전자우편에 의한 신고·신청서 등의 자격심사가 현지공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는 내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를 포함하면 10%대 수준인 22만여 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외부재자는 175,275명이며,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42,232명이다. 비율로는 국외부재자가 80.6%이며, 재외선거인이 19.4%이다.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12,50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뉴욕총영사관 9,980명, LA총영사관 9,865명의 순이며, 주요 3개국의 경우 미국 48,461명, 일본 36,089명, 중국 35,193명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결과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때 약 76.2%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대통령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순회 접수, 가족 대리 신청(2,293명) 및 이메일 접수(15,739명)가 허용되어 신고·신청률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공관 외의 장소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줄곧 논의되었던 투표 편의 방안이 입법되지 않아 공관까지의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공관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므로 참여의사가 있어도 도저히 공관까지 올 수 없는 재외국민이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대 재외선거를 관리하면서 재외국민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재외국민 수 산정 및 투표율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며, 대선 후에는 상시등록신청 등 재외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접수된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명부 작성(10. 31~11. 9)과 열람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19일(선거일전 30일) 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등은 12월 5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 중 전 세계 164개 공관마다 설치·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고·신청해 주신 재외국민에게 감사드리며, 신고·신청한 그 마음으로 투표에도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덧붙임 1.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마감상황(잠정) 1부.
2. 재외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끝.

[덧붙임 1]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마감상황(집정)

【 2012. 10. 21.(일) 13:00 현재 】

① 신고·신청 접수·처리상황 : 총 217,507건(9.74%, 공관 213,992건 + 국내 3,515건)

㉠ 공관 접수

대륙별	공관수	추정 재외 선거권자수	신고·신청자수			제19대 국선 대비	
			계 (%)	재외선거인 (신청률)	국외부재자 (신고율)	신 고 신청자수 (신고·신청률)	증가수 (증가율)
계	163	2,233,695	213,992 (9.58)	42,232 (4.60)	171,760 (13.06)	123,418 (5.53)	90,574 (73.39)
아 주	47	1,086,412	110,179 (10.14)	21,866 (5.26)	88,313 (13.17)	68,740 (6.33)	41,439 (60.28)
미 주	37	1,032,402	69,172 (6.70)	19,459 (4.03)	49,713 (9.04)	34,667 (3.36)	34,505 (99.53)
구 주	45	93,429	23,368 (25.01)	825 (4.36)	22,543 (30.25)	13,388 (14.33)	9,980 (74.54)
중 동	17	12,745	7,972 (62.55)	22 (137.50)	7,950 (62.46)	4,455 (35.57)	3,517 (78.95)
아 프 리 카	17	8,707	3,301 (37.91)	60 (4.76)	3,241 (43.52)	2,168 (25.73)	1,133 (52.26)

※ 최다 : 일본(대사관) - 12,503건, 최소 : 크로아티아(대사관) - 30건

※ 신고·신청자수 구성비 - 재외선거인(19.7%), 국외부재자(80.3%)

㉡ 국내 접수(구·시·군청)

구·시·군청수	국외부재자 신고자수	제19대 국선 대비	
		신고자수	증가수 (증가율)
251	3,515	1,006	2,509 (249.40)

※ 최다 : 창원시 진해구(경남) - 157건, 최소 : 보은군(충북)외 12 - 0건

㉔ 주요 3개국 접수(미, 일, 중)

국가별	공관수	추정 재외 선거권자수	신고·신청자수			제19대 국선 대비	
			계 (%)	재외선거인 (신청률)	국외부재자 (신고율)	신 고 신청자수 (신고·신청률)	증가수 (증가율)
미 국	12	866,170	48,461 (5.59)	11,733 (3.15)	36,728 (7.42)	23,027 (2.66)	25,434 (110.45)
일 본	10	462,509	36,089 (7.80)	20,042 (5.43)	16,047 (17.22)	18,575 (4.02)	17,514 (94.29)
중 국	10	295,220	35,193 (11.92)	268 (8.05)	34,925 (11.97)	23,915 (8.10)	11,278 (47.16)

㉕ 지역별 분포상황

구 분	시·도별		구·시·군별	
	최다(서울)	최소(세종)	최다(강남구)	최소(울릉군)
신고· 신청자수	75,507	340	6,966	15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주요사무일정

※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1. 10. 14부터 '13. 1. 18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의원선거일전 180일부터 대통령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⑨ 규§136의2
'12. 7. 22부터 '12. 10. 20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10. 31부터 11. 9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11. 10부터 11. 14까지	토 수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 § 2 1 8 의 10,11
11. 15부터 11. 18까지	목 일	재외선거인명부등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11. 19	월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11. 25부터 11. 26까지	일 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법§218의14④ 규§136의13
11. 29까지	목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④
12. 5부터 12. 10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법§218의17① 규§136의15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 만료일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12. 19	수	투 표 (오전6시~오후6시)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법§155 법§176 규§95의2